2018년도 제1차 복무관리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

2018.5. / 감사부

1. 점검개요

□ 개요

○ 목적

- 임직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한 부패방지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
- 출퇴근 등 공직복무관리 실태 점검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

○ 추진기간 : 2018. 4. 30. ~ 5. 2.

○ 점검대상

-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이하 청탁금지법)에서 명시한 '외부강의등'의 해당하는 임직원 외부활동
- 직원 출퇴근, 근무지 이탈 등의 근태관리

○ 점검방법

- 임직원 외부활동 신청서 및 성과보고서 등 외부강의 활동 자료 검토
- 출퇴근시스템 기록 자료 및 ERP시스템 출장, 휴가 등 관련 자료 확인

□ 중점 점검사항

○ 청탁금지법에서 명시한 외부강의등의 외부활동 시 관련 법령(사례금 수수제한, 사전신고·사례비 보완 신고기한 준수 등) 준수 여부

- 대상기간 : 2017. 7. 1. ~ 2018. 4. 20.

○ 직원 출퇴근 시간 준수 및 결근·무단이석 등의 복무점검

- 점검기간 : 2018. 4. 20.

2. 점검결과

□ 총평

○ 외부강의등의 활동에 대한 사례비 수령 시 청탁금지법에서 명시한 사례비 상한 금액 기준을 준수하여 수령하는 등 위반사례 없음

○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사전신고 미준수, 사례비 지연신고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·개선 필요

○ 직원 출퇴근 시간 준수 및 결근·무단이석 등 복무점검의 경우 점검일자(2018. 4. 20) 출퇴근 기록(신분증 체크기록)과 실지점검 등을 실시한 바 위반사항 발견되지 않음

□ 점검사항별 결과

(1)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기준 준수 여부

○ 점검대상 기간 중 총 155건의 외부활동이 신고 되었으며, 전체 신고 내역 중 청탁금지법에서 명시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기준을 초과하여 사례비를 수령한 건은 발견되지 않음

(2) 외부강의등의 사전신고 준수 여부

○ 대상 기간 내 외부활동 신고내역 점검 결과 사전신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내역이 확인되어 계도 및 시정 필요

- 청탁금지법 제10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 제2항, 제3항에 따라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 사전신고의 의무가 있고, 부득이한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신고를 마쳐야 하나,
- 점검결과 2건의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활동 종료일자로부터 2일이 초과한 이후 최초 신고를 하는 등 지연신고 내역이 확인되었음

<표>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미준수 내역 및 지연신고 현황

소속 (활동일 기준)	성명	지연기간
◎◎◎◎◎	○○○	10일
◇◇◇◇◇	□□□	18일

(3) 외부활동 허가신청 및 성과보고 시 위임전결규정 준수 여부

○ 외부활동 성과보고 시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기안자 전결로 처리한 내역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계도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

- 예술위「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」 제3조(허가절차)와 제6조(성과공유) 조항에 따르면 근무시간 내의 외부활동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, 외부활동 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,
- 일부 외부활동 성과보고의 경우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 없이 기안자 전결로 부적정하게 처리한 내역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계도 및 전사공지 실시 등 관리 체계 개선 필요

3.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

일련번호	지적사항	조치요구
1	○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의무 미준수	○ 관련자 2명 주의 조치 - ◎◎◎◎◎ ○○○, ◇◇◇◇◇ □□□
2	○ 외부활동 허가신청 및 성과보고 시 위임전결규정 미준수	○ 외부활동 허가신청 및 성과보고 시 위임전결규정 준수 철저
3	○ 외부강의등 외부활동 신고 관리 체계 미흡	○ 외부강의등의 외부활동 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에 대한 전사 공지 및 안내 실시 - 외부강의등의 외부활동 시 신고기한(최초 신고, 사례비 보완 신고 등) 준수 철저